

의안번호	제 3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3월 4일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371
----------	-----

제출연월일 : 2020년 3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 '19.6월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창업지원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반영 필요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출연금 증액 반영 필요)	350,00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1,2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2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7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9조」 별표6(지원협약)
2	신용보증기 금	▶ 산업부가 「잠재적 부도위험군」으로 전략한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대기업이 참여하는 「유동화회사보증 프로그램(P-CBO)」 추진 ▶ 우리 도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수소전기차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10억원 출연 결정 및 협약	1,000,000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 (전략산업 지원사업)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5. 기타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상규	김정희	임정빈	8443

기관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양성광 ○ 일반현황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규모 : 3실 7본부, 직원수 144명 -주된사업 :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출자·출연 사업비	○ <u>1회 추경 출연 예정금액 : 350백만원(도비)</u>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계	20년 기정 예산액	20년 1회 추경액	재원별		
충북청주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0.2.~ '20.12.	600	250	350	7,060	5,860	600	600
※국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직접지원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필요 *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국비 대비 지방비 20%이상 매칭) ○ 기존 5개 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9.6월)에 따라,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역경제 발전과 4%경제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드릴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등 기타자료 							

1-① 관리 ·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옴
-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 6월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총 2.2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며, 스마트IT 부품·시스템 분야를 특화 육성할 계획임
-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 국비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7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6에 의한 협약
-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30~45억원) 해 왔으며,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증액에 따른 도비 출연금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결산액	2020년 예산액 (본예산) (C)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		
			계(B+C)	본예산 반영액(B)	1회 추경 검토액(C)
충북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250	600	250	350

※ 본예산 대비 증가 사유: '20년도 국비 증액(25억원→58.6억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1-2 출연기관 현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설립근거	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전화번호 : 042-865-8800			
				홈페이지 : www.innopolis.or.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 9.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12. 7. :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명칭변경) '18. 2. : 준정부기관 지정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원현황 (20.02.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4명		144명(무기계약직 11명포함)				
임원 (20.02.0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양○○	(前)국립중앙과학관장		2018.01.16~2021.01.15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		
	비상임이사 (당연직)	양○○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		
	비상임이사	권○○	(現)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 연구센터장		2018.06.18.~2020.06.17		
	비상임이사	원○○	(現)동의대 스마트전력반도체센터 초빙교수		2018.06.18.~2020.06.17		
	비상임이사	홍○○	(現)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과확산부장		2018.06.18.~2020.06.17		
	비상임이사	신○○	(現)비씨홀딩스 주식회사 자문		2018.12.24.~2020.12.23		
	비상임이사	이○○	(現)원광대 약학대학 교수		2018.12.24.~2020.12.23		
	감사(비상근)	이○○	(現)(사)혁신경제 감사		2018.10.10.~2020.10.09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특구법 제46조) -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협력 - 국내·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 건물, 시설, 기자재의 취득, 공급 및 임대 						
자본금 (단위: 백만원)		41,263 (19.12월 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 백만원)	142,888(출연) (19.12월 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19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55,935
	예산액	166,396	130,333	132,828		부채	13,848
	지자체 지원액 (출연금)	5,830	4,550	3,340		자본 (자산-부채)	42,087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0,222			109,488		734	

1-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출연	600백만원(도비) (기정액 250, 추경 350 반영필요)

□ 목적 및 필요성

- 기술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
-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 출연개요

- 사업명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기간 : 2020. 2. ~ 12.
- 출연액 : 600백만원(기정액 250, 1회추경 350)

(단위:천원)

구분	2020년			비고
	계(A+B)	기정(A)	금회추경(B)	
계	7,060,000	3,000,000	4,060,000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 (국비25억→58.6억)
국비	5,860,000	2,500,000	3,360,000	
도비	600,000	250,000	350,000	
시군비	600,000	250,000	350,000	

- 주요내용 : R&D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

□ 산출기초

- 강소형 기술 발굴·기획, 기술이전사업화, 기업성장지원 사업 등 추진
- ※ 도비 출연금은 지역 특화사업에 활용

□ 기대효과

-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
- R&D-사업화-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및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구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

1 기술발굴 및 연계 — 700백만원

□ 목 적

-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마케팅, 외부 수요 발굴 및 매칭, 유관 기관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한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

□ 추진방향

- 충북대학교, 주변 혁신기관, 강소특구 육성 협의체 통한 수요 기반 기술발굴 및 전/후방 산업 연계 통한 수요확보 기반 기술이전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① (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충청권 기술사업화 거점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급 기반 기술발굴 및 최종 제품 전/후방산업 연계 수요 기반 기술발굴
- ②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의 용도별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설립·육성 지원

2 기술이전 사업화 — 3,000백만원

□ 목적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분야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요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분야와 연관된 기술사업화 과제 50%이상 지원 원칙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대학의 기술을 이전·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또는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등

□ 추진방식

- 장소특구별로 지원대상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구재단)이 통합 공고, 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지원대상 선정

□ 목 적

-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창업 촉진과 유관 기관 연계 투자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추진방향

- 창업기술 실증 지원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 청주 강소특구 내 창업 활성화 및 초기창업 투자 활성화

□ 사업내용

- ①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대학 기술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자 후보군 발굴, 창업아이템 검증, 창업 후 후속지원 연계 하여 창업 활성화
- ②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 하여 초기투자·멘토링·데모데이 등의 후속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추진

□ 목 적

- 혁신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술 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 스마트 IT 부품/시스템 분야 R&BD 환경 고도화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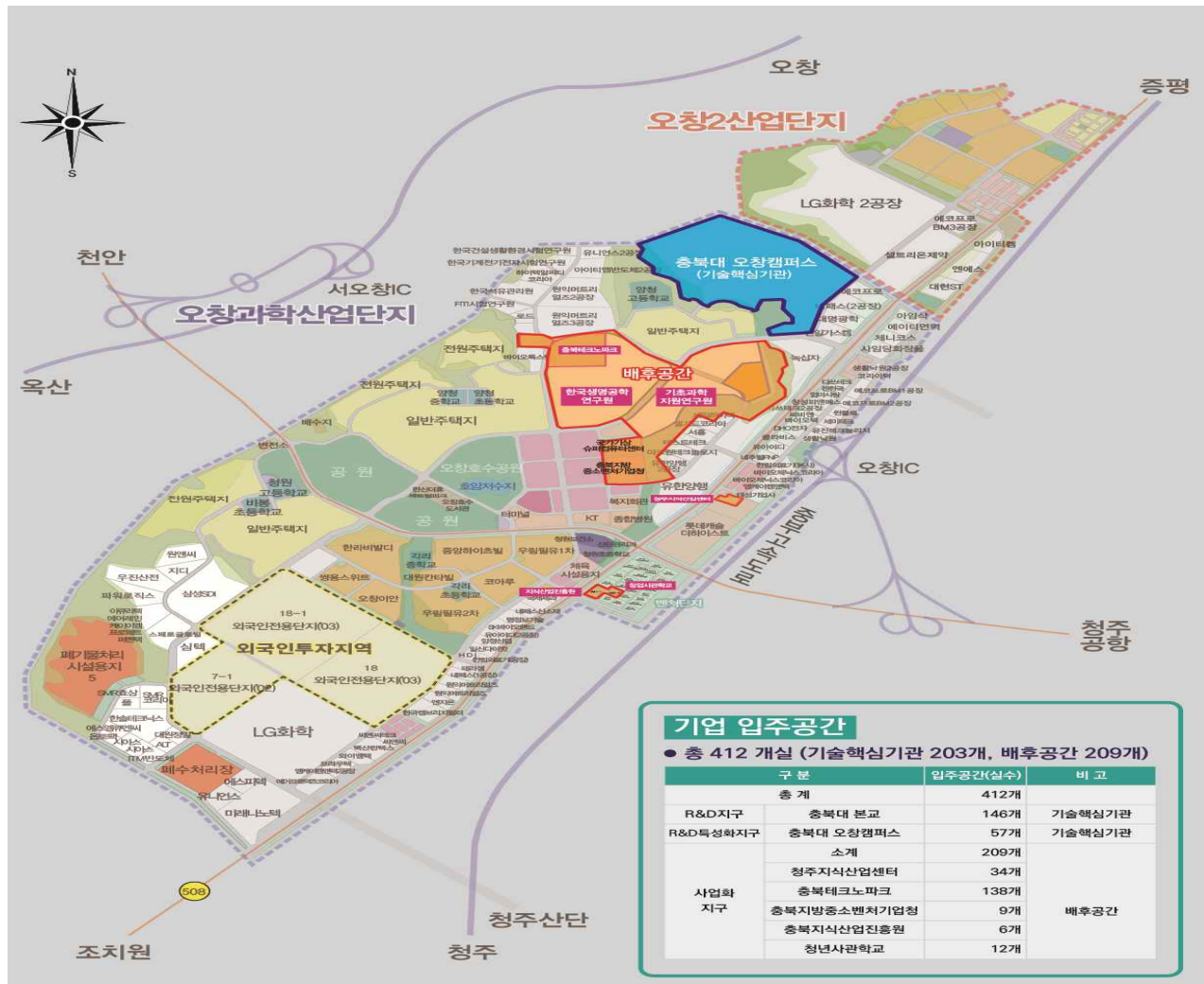
-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특화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 지원, 미래기술 융합 제품혁신 등 다양한 특화 활동 전개

□ 사업내용

- ① (혁신네트워크 육성) 충북청주강소특구 육성 협의체 및 스마트 IT 특화 혁신 네트워크 운영으로 연계·협력 성과 창출
- ② (지역 특화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강소특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질적 성장기반 마련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거래처 발굴 활동 지원 등 판로개척
- ③ (미래기술 융합 제품혁신 지원) 미래기술 융합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제품 혁신을 지원하여 기술 업그레이드, 스케일업, 성능 및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 대·중견기업과 주기적인 기술제품 교류 네트워크 지원
- ④ (특화기업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주요 시장 진출을 타겟으로 해외 수요가 발굴되면, 해외 비즈니스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및 강소특구 특화분야 중심의 해외전문전시회를 신규 발굴, 특구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및 해외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 프로세스 솔루션 지원

붙임2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위치도 및 배후공간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

○ 협 약 명 :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

○ 협약기간 : 지정 고시일 ~ 지정해제 고시일

○ 협약당사자

(가) 충청북도지사 이 시 중

(나) 청주시장 한 범 덕

(다)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정하고, 육성·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와 (나)와 (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내용)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로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① (가)와 (나)와 (다)는 충북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가)와 (나)와 (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 현장 확인, 관계서류 열람, 통계자료 조사,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과 역할) ① (가)와 (나)와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운영
2.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3.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자원 분담
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 이상
나. 특구 기술금융 조성·운용 동참
다. 연구개발특구육성(비R&D)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 이상

② (가)와 (나)와 (다)는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
2.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입지, 토지, 인력, 기술, 실증화, 사업화 등)
3. 산·학·연·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
(기술사업화 상담 인력·조직 지원 및 공유 등)
4.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 및 관리 협조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대부·매각, 부지매입비 지원 등)
5.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
(인·허가 의제처리, 사업시행자 유치 등)
6.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③ (가)와 (나)와 (다)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가)와 (나)와 (다)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가)와 (나)와 (다)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가)와 (나)와 (다)는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가)와 (나)와 (다)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타) ① (가)와 (나)와 (다)는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 관리 및 사용,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① (가)와 (나)와 (다)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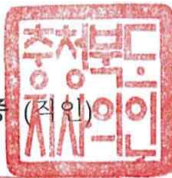
③ 본 협약서는 (가)와 (나)와 (다)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9월 7일



(가)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나) 청주시장 한 범 덕



(다)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수익사업의 수익금
-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8조(사업)**

-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를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 7.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2장 강소특구 지정원칙

제9조(협약) ①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목적 및 기간
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
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
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도지사 및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 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별표6>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

2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자동차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용일	곽용관	이은미	8474

기관명	신용보증기금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장) : 윤대희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신서동) -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조직(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9영업본부, 109영업점, 15재기지원단, 11채권관리단) - 기관성격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주된사업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출자·출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10억원(도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2020~	-	10	10	-	10	-	-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산자부)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 동참하여 우리 도내 기업 자금유통성 향상 ○ 자동차부품산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용보증기금 - 우리 도,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간 MOU('19.12.23.)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략산업과-7615(2019.11.18.)호 산업부 자동차부품업체 유동성지원정책 참여 추진계획 								
지도감독 부서인견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P-CBO를 통해 고정금리로 장기(3년) 자금의 안정적 이용이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단독 심사로 절차 간소화 ○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 3.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 관계법령 								

2-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을 도입하여 지자체 참여를 요청('19.10.30)
- 이에 우리 도는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미래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P-CBO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10억원을 출연하고자 결정하고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19.12.23)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이며,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제1항 10호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출연을 통해 유동성 부족에 처한 도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고정금리로 장기(3년)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단독 심사로 절차가 간소화 되어 자금유통성이 강화됨
-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3 출연금 검토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 예산액(최종) (C)	2020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	-	1,000	1,000	0	1,000

2-② 출연 기관현황

신용보증기금

설립근거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전화번호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6.06.01. 신용보증기금 창립 1995.05.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 2014.12.31. 신용보증기금 본점 대구 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01.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748명		2,745 명	3명			
임원 (‘20.01.3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의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윤OO	국무조정실장(장관급)	2021년 06월 04일			
	전무이사	채OO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부문 이사	2020년 08월 06일			
	사내이사	조OO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 이사	2020년 02월 27일			
	사내이사	최OO	신용보증기금 전략사업부문 이사	2020년 08월 06일			
	사내이사	김OO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부문 이사	2020년 11월 13일			
	사내이사	박OO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	2021년 11월 13일			
	사외이사	이OO	현대엔지니어링 고문	2020년 10월 04일			
	사외이사	김OO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	2020년 10월 04일			
	사외이사	윤OO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2020년 10월 04일			
	사외이사	주OO	법무법인 민 구성원 변호사	2020년 10월 04일			
	사외이사	김OO	KB금융지주 사장	2021년 04월 17일			
	사외이사	한OO	한경대학교 교수	2022년 01월 30일			
	사외이사	서OO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	2022년 01월 30일			
		감사	신OO	대우조선해양(주) 감사실장	2020년 10월 14일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경영지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자본금 (단위:백만원)	비영리법인으로 해당사항없음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9,671,223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8,078,950
	예산액	7,827,790	7,056,975	7,642,729		부채	2,741,236
	지자체 지원액	500	5,500	0		자본 (자산-부채)	5,337,71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27,097			1,780,305		46,792	

2-3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출연	10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산업부가 「잠재적 부도위험군」으로 전략한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대기업이 참여하는 「유동화 회사보증 프로그램(P-CBO)」 추진
- 우리 도는 자동차부품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수소전기차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10억원 출연 결정 및 협약

□ 출연 사업개요

- 사업명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 사업기간 : 출연금납부일('20. 10. 30까지) ~ 유동성회사보증 운영종료일
- 출연기관 : 신용보증기금
- 출연액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출연 지자체 관내 기업 자금 우대 지원*

*① 우선 지원 ② 발행금리 0.2%p 감면 ③ 지자체 출연금의 10배(100억원) 이상 지원

□ 산출기초

-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 1,000백만원
- P-CBO추진('19.10월 기준)후 충북기업에 235억원(전체 3.3%)지원 된 상황 고려, 지자체 출연할당 350억원의 3%인 1,000백만원 출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출연금	1,000	-	-	1,000

□ 기대효과

- 고정금리로 장기(3년) 자금의 안정적 이용 가능
- 신용보증기금 단독 심사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자금융통성에 기여
-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에 100억 규모 이상의 자금지원 효과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자동차산업 정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동차부품기업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유동성지원 부족으로 신성장산업 기반 상실
- 자동차산업 주관부처인 산업부 협약 불이행은 우리도 자동차산업 육성의지의 부정적 표명으로 산업부의 추후 자동차산업정책 추진시 불이익 우려

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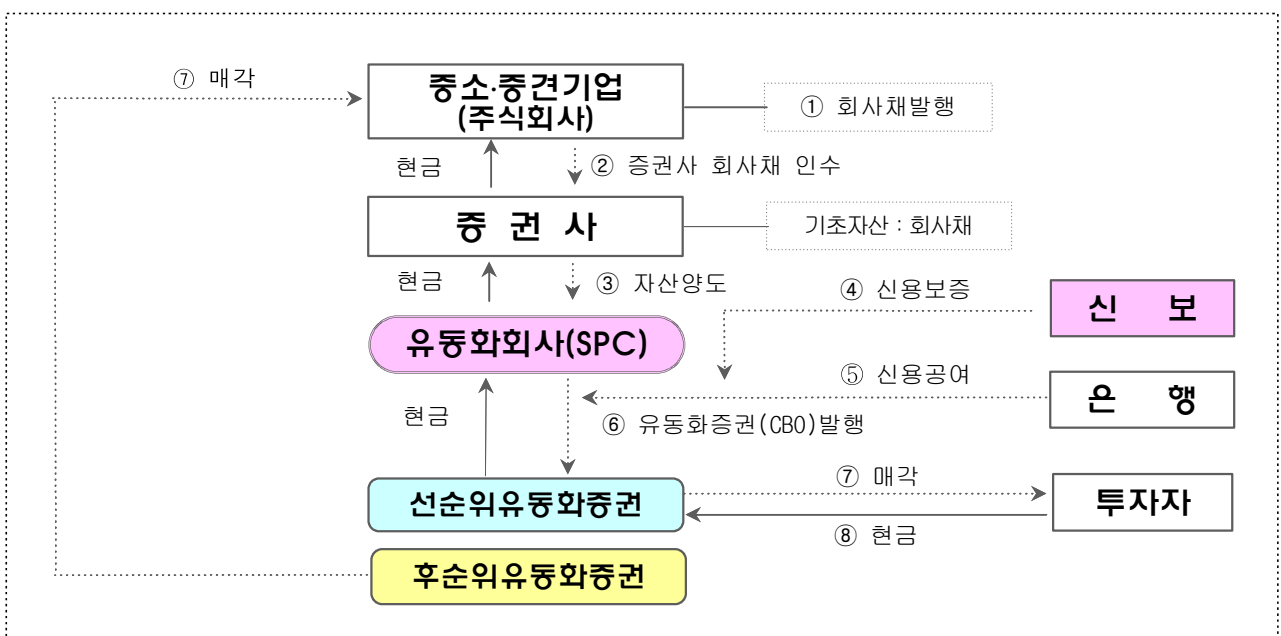
유동화 회사보증 프로그램(P-CBO)

- 유동화전문특수목적회사(SPC)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후,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회사채 발행 기업에게 발행대금을 융통해 주는 프로그램
- 산업부 P-CBO사업 개요

* 보증재원(3000억원, 정부지자체대기업)을 기반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2조원 규모 자금을 자동차 부품업체, 기타업체에게 지원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대상	최소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발행규모	2조원(자동차부품업체 1조원, 기타업종 1조원)
보증재원	정부·대기업 2,650억원, <u>지자체 350억원</u>
지원한도	(중소기업)15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지원기간	기업이 3년 뒤 원금상환(3개월 단위로 이자 납부)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②-④ 관계법령 발취

① 지방재정법(2020-1-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신용보증기금법(2019-1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2020-1-1)

제5조(전략산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사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산업화 지원 사업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사업
5. 세미나, 해외 교류·시장 진출, 홍보 지원 사업
6. 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판매촉진 사업
7. 신사업 기획 및 연구 사업
8.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9.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